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256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2569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가단12146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정형윤

피고, 항소인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정태상, 정성원, 신동일

변론 종결 2022. 8. 17.

판결 선고 2022. 9. 21.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가단121460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3. 5. 3. 접수 제13345호로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 및 같은 등기소 2013. 5. 3. 접수 제13346호로 설정등기를 마친 지상권에 관하여 C와 피고들 사이에 2018. 7. 17. 체결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C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8. 7. 24. 접수 제20537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8. 7. 24. 접수 제20538호로 마친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제2항에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의 "<적극재산 목록 및 가액>표 및 <소극재산 목록 및 가액>표"를 아래와 같은 표로 바꾼다.

<적극재산 목록 및 가액>

1	인천 남동구 G, H, I 토지지분 99/100	4,752,806,058
2	인천 남동구 G, H, I 소재 건물 12개호 지분 99/100	1,218,690,000
3	경기도 연천군 J, K, L, M 토지 지분 7/10	323,105,300
4	F에 대한 채권액	150,000,000

1	인천 남동구 G, H, I 토지지분 99/100	4,752,806,058
합계	6,444,601,358	

<소극재산 목록 및 가액>

1	신용정보회신서 상 C의 채무	4,788,978,000
2	인천 남동구 0동 토지에 관한 피담보채무	1,207,527,809
3	P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21,095,466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27,371,890
5	남인천세무서에 대한 채무	313,025,770
6	인천 연수구청에 대한 채무	33,177,820
7	D에 대한 보증채무(기업은행)	1,377,680,988
합계	7,768,857,023	

○ 제1심판결 제4면의 "[인정근거]"에 "갑 제19 내지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Q은행, R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를 추가한다.

2. 피고들이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C의 기업은행 등에 대한 채무 6억 4,000만 원과 15,555,000원의 채무는 중복계산 된 것으로 위 채무를 C의 소극재산에서 제외하면 C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C의 기업은행 등에 대한 채무 6억 4,000만 원과 15,555,000원은 중복계산 된 채무로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그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앞에서 본 표와 같이 C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여전히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태안

판사윤경아

판사박남천

별지